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801

제출연월일: 2024. 10. 21.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설립승인 취소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개교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외국교육기관이"를 "외국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 승인권자는	변경 또는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			
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외국교육기관이</u> 개교예정일	2. 외국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	없이		
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